

심 사 보 고 서

96. 2. 10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 무 위 원 회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 및 공적에 따라 년가, 공가,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95. 12. 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내무부의 표준안이 시달된 안건으로 이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년가를 1 ~ 3일간씩 확대 조정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실시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 근속 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효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감면
시한 만료가 97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 일반 승용자동차세액의 30 ~ 60선에
불과한 실효형 자동차의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무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실효형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CC당 최고 5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현행 지체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에게만 면제해 주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에게도 현행 1 ~ 5급
까지 면제 하던것을 1 ~ 6급까지로 면제 범위를 넓혔으며, 노인 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와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뿐아니라, 사실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조치 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2건 의안에 대하여 본 내부위원회에서는 공익적 사회 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